



축산법령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시행 2018.2.2.]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8-4호, 2018.2.2.,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 제·개정 이유

- 국내 축산여건 및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동물 복지 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 도모
  - (한·육우) 풀사료 급여 기준 재설정
  - (산란계·육계·오리) 현실 반영이 가능한 인도적 도태방법 제시

### ◇ 주요내용

- 가. 농후사료 과다 급여에 따른 대사성 신증 등 질병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고, 비육말기 농후사료 위주 급여하는 국내 축산환경을 고려한 풀사료 급여기준 재설정(완화)
  - 풀사료 급여 비율 40% → 30%[단, 출하전 6개월은 풀사료 15%(건물기준)이상 제공 가능]
- 나. 가금류 농장 인증기준 중 인도적 도태 방법 다양화(완화)
  - 전기충격법, 경추탈구법 이외에 CO2 가스법 추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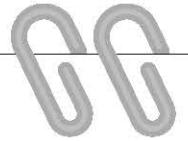
## 【제정·개정문】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4호

동물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4항, 제33조에 따라「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4항, 제33조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출입·검사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5. "인증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 ○ 제2장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4조(인증기준)** 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종별 농장 인증기준은 별표1-1, 별표 1-2, 별표1-3,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과 같다.

### 제5조(인증의 신청)

- ① 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



**제6조(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검역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한다.

1. 인증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②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심사)**

① 검역본부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별표 7에 따라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심사결과와 통보)**

①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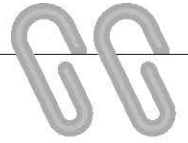
② 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제9조(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 제4장 출입·검사 등

**제10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출입·검사 등)

① 조사원은 영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출입·검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인증 기준 준수 여부
2.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표시사항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3.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의 유해 잔류물질검사
4.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이 취소된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하는지에 관한 사항

② 인증농장 및 그 유래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 대한 출입·검사 조사요령은 별표 5와 같다.

③ 조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